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52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6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을 조정하고, 업종별로 운영 중인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위탁업무인 실적신고 업무 처리의 고도화를 위해 우리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 조정
 -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 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우리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 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lee1003@korea.kr

- 팩스 : 044-201-55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전화 044-201-3616,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